

2002. 11. 28 (목) 10 : 00
제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심사결과보고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 문 행 의원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1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11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니,

질의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만 보고 드리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매각기준인 읍·면 지역에서 700㎡ 이하 규모 토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 할 수 있다는 기준에 부합되는 토지로서

거창읍 대동리 610-2번지 13㎡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자투리 땅으로, 그리고 가조면 마상리 492-49번지 109㎡는 그 대지 위의 기존 건물 소유자가

기이 대부사용하고 있으므로, 각각 인접 사유토지 소유자 및 기대부 사용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사용의 효용도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반 토론 등을 충분히 하여 의결한 만큼,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第94回 居昌郡議會(臨時會)

2003年度 公有財產 管理計劃案

居 昌 郡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47
----------	----

제출년월일 : 2002. 11.
제안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처분코자 하는 재산 (토지 2필지, 122㎡)
 - 공유재산 관리(매각) 기준에 부합
 - 일단의 면적이 700㎡ 이하인 영세규모 토지매각 ⇒ 2필지, 122㎡

2.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소재지	지목	수량	예정금액 (공시지가)	비고
매각	토지	거창읍 대동리 610-2	대지	13	1,950 (150)	
		가조면 마상리 492-49	대지	109	2,474 (22.7)	

3. 취득재산의 표시

4. 근거 및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36조 : 공유재산관리계획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3년 공유재산 처분계획

1. 재산의 표시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예정가격 (공시지가)	비고
계		2필지		122	4,424	
매각	토지	거창읍 대동리 610-2	대지	13	1,950 (150)	
	“	가조면 마상리 492-49	대지	109	2,474 (22.7)	

※ 위 예정금액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확정금액이 아님으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2. 처분사유

- 거창읍 대동리 610-2 (대지) 13m²
 - 대동리 그린아파트 지내 1999년도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고 남은 잔여 토지로 이을량 소유인 대동리 612-5번지 대지와 인접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재산권행사 등에 지장이 있어 민원해결코자 매각.
- 가조면 마상리 492-49 (대지) 109m²
 - 가조면 마상리 최순철씨의 가옥인 444번지와 인접하고 있는 토지로 농가주택건립에 따른 애로와 지장이 있어 민원해결코자 매각.

3. 처분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 또는 거창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의2
- 가격결정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2항의 규정⇒감정평가(산술평균)

4. 관련공부 확인

-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 위치도 및 지적도

⇒ “따로 붙임”

